

강화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「강화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강화군의회 회의 규칙」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
2024년 6월 5일

강 화 군 의 회 의 장

1. 제안이유

공무원의 장기재직휴가 대상 및 휴가 일수를 확대하고 새내기 휴가를 신설하여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처우 개선을 통해 업무능률을 제고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장기재직휴가 대상 및 휴가 일수 확대(안 제15조제3항)

-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: 0일 → 10일
-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: 10일 → 15일
-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: 20일 → 25일
- 재직기간 30년 이상 : 20일 → 30일

나.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 새내기 휴가 3일 부여(안 제15조제7항)

3. 개정 조례안: 별도 첨부

4. 의견제출

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14일(금)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우편 또는 팩스로 강화군의회의회장(참조 : 의회사무과장, 전화 032-930-3756, 팩스 032-930-3509, 주소: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394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- 나. 의견제출자의 주소·성명(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) 및 전화번호
- 다. 의견서 제출 서식

「강화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한 의견서

제출자	해당 조항	의견	비고
○주소 : ○성명 : ○연락처 :			

※ 다른 서식도 사용 가능합니다.

5. 공청회 개최계획: 없음

6. 참고사항

- 신구조문 대비표 1부(별도 첨부)
- 관계법령 발췌사항 1부(별도 첨부).